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사경과**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1월 11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12일(제8차 교육사회위원회)

**2. 제안설명 요지(교육국장 노재전)**

**가. 제안이유**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 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보완·정비하려는 것임

**나. 주요내용**

- 안 제1조의 목적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등을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음
- 안 제4조의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

○ 제4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

- 안 제29조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, 학생회관, 학생야영장, 교직원복지회관을 두고
- 안제30조 내지 안제33조는 도서관, 학생회관, 학생야영장, 교직원복지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 및 명칭 등을 정하였음.

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재준)**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소속기관명칭의 사용 및 인용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9. 첨부서류**

-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(제29조 내지 제3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4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

제29조(설치)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, 학생회관, 학생야영장,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.

제30조(도서관) ①도서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.

②도서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2】와 같다.

제31조(학생회관)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개발,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,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.

②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3】과 같다.

제32조(학생야영장) ①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 둔다.

②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,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4】와 같다.

제33조(교직원복지회관)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·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.

②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5】와 같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2】

##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

관 할 교 육 청	도 서 관 명	위 치
충청북도충주교육청	충주학생도서관	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229
충청북도충주교육청	중 원 도 서 관	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130-3
충청북도청원교육청	청 원 도 서 관	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-3
충청북도보은교육청	보 은 도 서 관	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-4
충청북도옥천교육청	옥 천 도 서 관	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9-1
충청북도영동교육청	영 동 도 서 관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-3
충청북도진천교육청	진 천 도 서 관	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49-2
충청북도괴산교육청	괴 산 도 서 관	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-12
충청북도괴산교육청	증 평 도 서 관	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764
충청북도음성교육청	음 성 도 서 관	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
충청북도음성교육청	금 왕 도 서 관	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3-3
충청북도단양교육청	단 양 도 서 관	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-1

【별표 3】

###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

관 할 교 육 청	학생회관명	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치
충청북도제천교육청	제천학생회관	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

【별표 4】

###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

관 할 교 육 청	야 영 장 명	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치
충청북도충주교육청	중원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172
충청북도제천교육청	제천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-36
충청북도옥천교육청	옥천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6
충청북도영동교육청	영동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
충청북도괴산교육청	청천학생야영장	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-1

【별표 5】

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

관 할 교 육 청	교직원복지회관명	위	치
충청북도충주교육청	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	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-3	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33조 내지 제 36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 제 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33조 내지 제 36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한다) 제 7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“본청”이라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4조(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<b>제4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</b></p> <p>제29조(설치)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, 학생회관, 학생야영장,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0조(도서관) ①도서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.</p> <p>②도서관에 관장을 두며, 도서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2】와 같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1조(학생회관)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, 소질개발,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,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.</p> <p>②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3】과 같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32조(학생야영장) ①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 둔다.</p> <p>②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,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 【별표 4】와 같다.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3조(교직원복지회관)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.</p> <p>②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③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 <b>별표 5</b>와 같다.</p>

# 관계 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**제34조(교육기관의 설치)**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**제12조(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설치)**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·도교육청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,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